

의안번호	2203932
의 퇴 인	김한규의원
회 답 일	2024.11.1.
추 계 번호	24D375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금융감독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3억 8,100만원, 2030년 15억 2,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1억 6,100만원(연평균 14억 3,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립 (안 제13조)	1,381	1,363	1,416	1,472	1,529	7,161	1,4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두고, 금융감독원에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둘 수 없음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재 보조금을 제외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예산을 금융감독원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함
-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¹⁾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립(안 제13조)

- 개정안에 따라 현재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폐쇄하고 다른 기관에 신규로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추계 방법은 기존의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규모와 동일하게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요비용에서 기존 보조금을 차감하여 산출

(1) 기존사업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의 내역사업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사업에서 보조금(2024년 3억 2,700만원)을 지원받고 있음
 - 동 사업에서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국내외 금융회사 진출입 지원 및 국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2024년 10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5	2.1	2.0	2.0	2.0	2.0	2.0
명목임금상승률	3.2	3.6	3.9	3.8	3.8	3.8	3.8

내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2024년 기준 보조금 3억 2,700만원이 추계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

(2)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신규 설립

- (인건비) 신규로 설립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현행과 같이 총 10명(일반직원 6명, 통역사 4명)으로 하고, 보수 수준도 현행 수준으로 가정
 - 일반직원은 2024년 예산 기준 1인당 연간 1억원, 통역사는 연간 7,000만원²⁾을 적용
 - 직원 및 통역사의 보수(수당 포함)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한 후, 퇴직적립금 및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출한 공공기관 기관부담금³⁾을 합하여 인건비를 산출

[표 2] 보수 추정(2024년 예산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일반직원	통역사	합 계
인원수 (A)	6	4	10
1인당 연간 보수 (B)	100	70	—
소요비용 (A×B)	600	280	880

자료: 금융감독원

[표 3] 인건비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보수 (A)	947	983	1,020	1,059	1,100	5,110
퇴직적립금 (B=A÷12))	79	82	85	88	92	426
기관부담금 (C)	107	112	118	123	129	5,890
합 계 (A+B+C)	1,133	1,178	1,223	1,271	1,320	6,125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금융감독원 제출(2024.10.)

3)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가정하는 공공기관 기관부담금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되며, 연도별 기관부담률은 2026년 11.330%, 2027년 11.425%, 2028년 11.519%, 2029년 11.614%, 2030년 11.704%임

- (운영비)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4,244만원(2024년)에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SS Speaks⁴⁾ 행사 운영비 3,175만원, 해외 주요국가 금융감독제도 편람 등 발간비용 1,069만원 등 4,244만원 소요 예상
- (사업비)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3억 2,400만원(2024년)에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부산 해양금융 컨벤션 8,000만원, 해외IR, 금융회사 진·출입 관련 간담회·세미나, 해외감독당국 방문출장, 홈페이지 개편 등 2억 4,400만원 등 3억 2,400만원 소요
- (임차비) 현재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폐쇄하고 신규로 10명 규모의 센터를 서울지역에 임차한다고 가정하면, 공공기관의 임차면적 평균인 43.6㎡⁵⁾를 적용하여 총임대면적 436㎡(10명×43.6㎡)을 산출한 후 서울지역 임대료 23.5천원(2024년 2사분기, 한국부동산원)에 12개월을 곱하면 1억 2,295만원(436㎡×23.5천원×12개월)으로 산출
 - 서울지역의 최근 임대료 상승률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추계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
-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6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직원수 10명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1인당 자산취득비⁶⁾를 곱하여 7,033만원(10명×703만 3천원)으로 산출
- (합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임차비, 자산취득비를 합계한 결과 향후 5년간 88억원으로 예상

4)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방향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목적으로 매년 FSS Speaks 행사 개최

5)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인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관한 조직설립, 운영 단계 현황 연구(2023. 10)』에서 산정

6)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26년 공공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7,033,000원임 (2024년 10월 전망 기준)

[표 4]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인건비 (A)	1,133	1,178	1,223	1,271	1,320	6,125
운영비 (B)	44	45	46	47	48	230
사업비 (C)	337	344	351	358	365	1,756
임차비 (D)	123	123	123	123	123	615
자산취득비 (E)	70					70
합 계 (A+B+C+D+E)	1,708	1,690	1,743	1,799	1,856	8,796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가재정소요

- 신규로 설립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소요비용에서 기존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을 차감하면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71억 6,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존사업 (A)	327	327	327	327	327	1,635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립비용(B)	1,708	1,690	1,743	1,799	1,856	8,796
추가재정소요(B-A)	1,381	1,363	1,416	1,472	1,529	7,161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